

기관 독립 홈페이지 관리 지침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기관 독립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여 원활한 정보제공 및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관 독립 홈페이지의 범위)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기관 독립 홈페이지의 범위는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작 및 관리되며,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.

- ① 학술정보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별도 서버에 개설하여 교외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
- ② 제작 완료 후, 기관에서 구입하여 본교에 설치된 서버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
- ③ 홈페이지 제작 후 웹호스팅을 통해 운영되는 홈페이지
- ④ 기타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홈페이지

제3조 (기관 독립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)

- ① 학교 공동의 목표와 가치 추구를 위해, 기관 독립 홈페이지는 학술정보처의 지침을 반영하여 제작 및 관리되어야 한다.
- ② 각 기관 홈페이지의 제작 및 콘텐츠 관리 책임은 각 기관에 있다.
- ③ 각 홈페이지의 관리 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 1.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와 홍보를 책임진다.
 2. 해당 홈페이지가 해당 기관의 정보제공의 중심역할을 감당하게 한다.
 3. 홈페이지 운영자를 선임하며, 관리 감독한다.
- ④ 홈페이지 운영자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 1. 홈페이지 운영자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.
 2. 홈페이지 운영자는 홈페이지 게시관 관리 지침(지침 1-4)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지킬 의무가 있다.
- ⑤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이 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학술정보처는 해당 홈페이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기관 독립 홈페이지 관리 지침(1-3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(제2조, 제3조)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